

## DOJ, 기업결합 시정조치 가이드라인 개정

미국 법무부(DOJ)는 6월 17일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 명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결합 시정조치 정책 가이드」(Policy Guide to Merger Remedies, 이하 "Guide"라 한다)를 개정·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2004년 최초 Guide 발간 이후, 국경간 기업 결합 및 복잡한 수직결합이 급증하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Christine Varney DOJ 반독점국 차관보는 이처럼 변화된 환경에서 경쟁 촉진·혁신 유도·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04년 Guide 발간 후 변화된 기업결합의 경향뿐만 아니라 DOJ가 그동안 축적한 심사경험과 업무 관행을 반영했다.

우선 행태적 조치의 중요성이 강조된 점이 가장 큰 변화이다.

수평결합에 대해서는 주로 구조적 조치를 이용하고 필요한 경우에 행태적 조치를 보충적으로 활용한다는 기준 원

칙을 유지했지만, 수직결합에 대해서는 각 사안에 따라 맞춤형(Tailored) 행태적 조치의 이용이 확대되었다. 이는 국경간 M&A의 경우, 구조적 조치가 사실상 제한되는 점과 수직결합에 대한 DOJ의 적극적인 법집행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신설된 법무실(Office of General Counsel)이 동의명령절차의 진행 및 이행 여부 확인업무(송무부서 담당)에 대한 감독기능을 전담하게 되었다. 동의명령은,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법무부와 피심인이 시정방안을 합의하여 법원의 승인을 얻는 제도이다.

한편, 시정조치 검토시 고려되는 기본원칙은 개정되지 않아 기존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기본원칙으로는 ① 경쟁의 효과적인 보호 여부가 적절한 시정조치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 ② 개별 경쟁자가 아닌 경쟁 자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 ③ 시정조치는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경제적 원칙의 적용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 등이 있다.



## FTC, 석유사업 분야의 반독점행위 조사 착수

2011년 6월 20일 Jon Leibowitz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위원장은 Jay Rockefeller 의회 상무·과학·교통위원장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석유사업 분야의 반독점적인 행위에 대한 공식 조사 착수를 발표했다.

지난 3월 Jay Rockefeller, Maria Cantwell, Olympia Snowe, Ron Wyden, Mark Pryor 등 5명의 상원의원이 Jon Leibowitz 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내 ① 2009년에 제정한 석유시장 가격 조작 등을 금지하는 규정의 집행 의지 ② 최근 석유시장의 급격한 유가(油價) 변동에 대한 FTC의 대응 ③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 등 유관기관과의 조사 공조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석유업체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

Jon Leibowitz 위원장은 EIA(The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보고서를 인용해 “연초와 비교해 지난 5월초 정유업체의 이익률은 90% 이상 증가했으며, 생산가동률은 81.7%로 작년 같은 기간 동안과 비교해 7%p 감소했다”고 언급하면서 “FTC의 강제절차(Compulsory Process)<sup>1)</sup>를 활용해 ① 원유 공급업체, 정유업체, 수송업체 등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와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재고량, 공급량, 출하량 결정 등을 조작하였는지 여부 ② 사업자들이 미국 정부에게 원유 또는 석유제품의 도매가격 정보를 거짓 또는 왜곡해 제공했는지 여부 등 반독점적인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그는 또한 “최근 유가 상승이 미국 소비자들의 불안감과 미국 경제에 손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된 반경쟁적이고 기만적인 기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TC는 석유사업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유가조작행위 조사를 위한 법무부 산하의 특별조사팀(Oil and Gas Price Fraud Working Group)<sup>2)</sup>에 적극 참여하

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CFTC와 석유사업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상호 정보 교환 등의 협력을 위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

또한 석유도매시장의 정보 조작 및 기만행위를 금지하는 규정(Petroleum Market Manipulation Regulations)을 제정해 도매시장에서의 가격 또는 출고량 등에 대한 정보를 왜곡해 시장을 조작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진행해온 미국 전역의 360개 도시의 디젤 및 가솔린 소매가격과 20개 주요 도시지역의 도매가격의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석유시장에 발생하는 민·형사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감시하는 등 불법행위로부터 미국 소비자를 보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발표에 대해 석유 사업자들은 생산가동률 하락은 경기 침체 및 대체에너지 사용 증가에 의한 석유에 대한 수요 감소 때문이며, 높은 이익률은 중동지역의 값싼 원유를 이용하고 있는 소수 정유사업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존에도 석유가격 조사에 대한 많은 정치적 압력이 있었으며, 지난 수많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세금만 낭비할 것이라 평가절하했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각국에서 다양한 대응책이 제시되는 가운데, 이번 FTC의 조사를 비롯한 오바마 정부의 유가 대책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 받고 있다.

1) FTC의 강제조사권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Subpoena(구두진술·서면증거제출명령), CID(Civil Investigation Demand, 보고서 또는 의견서제출명령)을 포함한다.

2) 오바마 대통령의 유가조작행위 근절을 위한 지시에 따라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주검찰총장회의(NAAG),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연방거래위원회(FTC), 재무부(DOT), 연방준비이사회(FRB), 증권거래위원회(SEC), 농림부(USDA), 에너지부(DOE))가 참여해 구성된 조직이다.

## DOJ 반독점국 Varney 차관보, 8월 초 사임

DOJ 반독점국 Christine Varney 차관보(Assistant Attorney General)가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내비치고, 지난 8월 5일부터 기업결합 전문 로펌인 Cravath Swaine & Moore LLP에서 파트너로 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arney 차관보는 지난 2009년 1월 오바마 정부의 초대

DOJ 반독점국 수장으로 임명되어 약 2년 6개월 동안 근무했으며, 재임기간 동안 경쟁법을 강력하게 집행하면서 부시 대통령 집권 기간 중 완화됐던 독점금지법의 집행을 다시 강화하는 등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 Varney 차관보 재임기간(2009. 1.~ 2011. 7.) 중 주요 실적

- ① 단독행위 심사지침 보고서 전면 철회 : 2008년 9월에 발간된 동 보고서가 서면법(Sherman Act) 제2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에 지나치게 많은 장애물을 설치했다며 철회 (2009년 5월)
- ② 수명기업결합 가이드라인 개정 : 1992년 2차 개정 이후 18년 만에 그간의 기업결합 심사방식의 변화를 반영해 개정 (2010년 8월)
- ③ Ticketmaster와 Live Nation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해 조건부 동의명령 : 공연티켓 발권업체와 공연기획사 간의 수직결합에 대해 계열사 매각 등의 조건을 부과해 승인 (2010년 1월)
- ④ Comcast와 NBC Universal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해 조건부 동의명령 : 케이블 TV망 운영업체와 프로그램 공급사 간의 수직결합에 대해 NBC Universal 콘텐츠의 차별 없는 공급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 (2011년 1월)

이번 인사는 미국 행정부에서 집권 2년이 경과 후에 주요 기관장을 교체하는 관행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적으로도 DOJ 반독점국 수장이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근무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DOJ는 Varney 차관보 권한대행으로 부차관보였던 Sharis Arnold Pozen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Pozen 차관보 권한대행은 전임 Varney 차관보의 최측근이었으며, FTC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한편, 후임 인사로 누가 임명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유력인사로 Bill Baer와 Leslie Overton이 거론 중이다. Bill Baer는 Arnold and Porter 로펌의 대표이자, 워싱턴 법조계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양 진영으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다.

Leslie Overton은 전 Jones Day 로펌의 파트너로, 최근

DOJ로 돌아왔다.

또한 상원 사법위원회 반독점분과위원회 법무자문위원회가 업무를 맡고 있는 Seth Bloom도 상원의 인준 가능성이 높은 관계로 유력인사로 꼽히고 있다.

변호사인 David Turetsky, 오바마와 로스쿨 동문인 Edith Ramirez FTC 위원, 그리고 하버드 로스쿨의 Einer Elhauge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후임 인사는 전 세계 경쟁정책 분야의 리더인 미국의 경쟁정책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미국 내에서는 DOJ가 현재 진행 중인 AT&T와 T-Mobile USA 기업결합 건(390억 달러 규모)의 처리방향에, 이번 인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 DOJ 반독점국 Varney 차관보, 지난 2년간의 성과 평가

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 6월 24일, DOJ 반독점국 Christine Varney 차관보 조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Varney 차관보는 '반독점법의 엄중한 집행 : 독점금지국의 발전' 이란 주제로, 취임 후 지난 2년간의 반독점법 집행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 강연은 Varney 차관보가 취임 직후 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바 있는 향후 정책주진방향<sup>3)</sup>에 대한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DOJ의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Varney 차관보는 그간 법집행 상의 투명성, 명확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M&A 심사, 민·형사법 집행, 경쟁주창 등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하면서, 주요 성과로 몇 가지를 꼽았다.

우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효과적인 기업결합심사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1992년 2차 개정 이후 18년 만에 '수평결합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고 '기업결합 시정조치 정책 가이드' 역시 2004년 최초 발간 이후 국경간 M&A 및 복잡한 수직결합이 급증하는 상황과 수직결합에 대한 맞춤형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개정했다. 그는 또한 각종 기업결합 심사결과를 공개해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수직결합의 경우,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결합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행태적 조치(Conduct Remedies)를 적극 활용했는데, 지식재산권 사용승인(Licensing), 정보차단(Firewall)조항, 보고의무(Reporting Obligations), 불만창구 개설(Complaint Mechanism)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NBCU/COMCAST, 구글/ITA, Live Nations/Ticketmaster 등의 사례에서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의 제인 모리시(Jane Morrisey)는 "Can Ticketmaster's Builder Now Unseal It?"(2011년 6월 11일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DOJ는 조건부 승인 과정에서 결합회사가 참여하는 동의명령(Consent Decree) 절차를 사용해 경쟁을 효과적으로 확보해왔다"

고 평가했다.

아울러 Varney 차관보는 민·형사 법집행도 강력히 추진했다고 말했다.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형사소주와 동의명령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제재했다면서, 지난해 60건의 형사사건에서 84명을 기소했고, 벌금액과 배상액이 각각 5억5,000만 달러, 2,400만 달러, 그리고 총 7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채파생상품 시장에서 담합행위에 참가한 Bank of America에 대해 1억3,700만 달러의 손해를 배상하는 조건으로 리니언시 자격을 부여한 것과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전통적인 독점력 남용행위를 조사·처리한 사건, 그리고 독점적 의료사업자인 United Regional Health Care System의 배타적 거래행위를 Sherman법 제2조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시정한 사건을 주요성과로 설명했다.

한편, 의료보험회사인 Blue Cross Blue Shield of Michigan의 최혜국 조항 및 신용카드사 American Express의 수수료 등 카드 사용 정보 제공 금지행위에 대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Varney 차관보는 또한, 최근 주목하는 이슈로는 기술표준설정에 대한 반독점법의 적용문제이며, 특히매복과 같은 행위는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매복'이란, 특허권을 숨기고 있다가 표준으로 선정된 후에야 특허권을 주장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그는 반독점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는, 표준설정은 명확한 라이선스 규정, 공개, 공정한 배분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기술적이고 운영적인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Varney 차관보는 국내외 협력체제를 강화한 것도 자랑스러운 성과로 꼽았다. 상호의존이 심화된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와 유럽은 물론, 러시아·중국·인도 등 신흥경제국과 공동조사 및 양자·다자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경쟁촉진적인 제도의 조성을 위해 농업·통신·에너지·금융 서비스·보건 분야 규제기관 등과 협력해 경쟁제한적 법령 및 제도 개선에 주력해 왔다고 말했다.

3) ①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적극적인 법집행 필요성 ② 수평·수직적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 강화 ③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④ 새로운 영역, 특히 지식재산권 오남용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

## EU 집행위 부위원장, 유럽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정책의 역할 강조

Joaquin Almunia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6월 28일, BritishAmerican Business 연차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유럽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경쟁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Almunia 부위원장 연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그리스의 채무위기, 중국의 부상 등 여러 가지 내외부의 위협요인으로 인해 유럽의 산업경쟁력이 저해되고 있다. 이런 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산업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는데, 이들은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기업들의 부상을 그 예로 들고 있다.

하지만 특정기업 지원 등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의 많은 실패사례에 비추어볼 때, 국내산업의 보호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만약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는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국가보조는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갖는 분야(구조조정, 인프라 투자 등)에 한해서만 비차별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정부의 규제는 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하거나 특정 이익만 위한 규제는 제거되어야 한다.

또한 역내시장의 통합으로 인한 시장의 확대는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정리하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장 개방의 확대, 회원국 간 정책 조정의 촉진, 역내 경제통합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럽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현재 진행 중이다.

첫째, 집행위원회는 'Europe 2020 Strategy'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유럽의 성장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했다. 'Europe 2020 Strategy'는 2010년 3월에 발표된 유럽의 고용 창출, 생산성 향상, 사회 통합 강화를 위한 중기전략으로 2020년 까지 달성을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투자와 구조조정 등 경제성장을 위한 기본 조성과정에서 회원국 간의 공동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개별 회원국의 재정정책에 대한 EU 차원의 사전평가제도인 'European Semester'를 도입해 정책조정장치를 강화했다. 'European Semester'는 유럽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2011년 1월에 도입된 제도로, 6개

월을 주기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종료된 1차 Semester에서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간의 거시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출한바 있다.

셋째, 역내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Single Market Act'를 제정했다. 이것은 유럽의 시장 통합 강화를 위한 12가지 프로젝트를 제시한 법으로, 2011년 4월에 입안되었다. 특히 알무니아 부위원장은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시장의 통합과 역내교역 활성화를 위한 단일 온라인 시장 창출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고로, 현재 EU의 인터넷 사용자 중에서 9%만이 타 회원국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고 있으며, 총 소매매출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다.

공정하고 단호한 경쟁정책의 집행은 유럽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이에 앞서 2010년 'Annual Report'에서 지적(Smart) · 동반(Inclusive) · 지속가능한(Sustainable) 성장을 위한 유럽의 경쟁력 강화를 경쟁정책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바 있다. 카르텔 및 시장지배적 자위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는 역내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시장경쟁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업결합에 대해서 불허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지만, 경쟁제한성이 우려되는 경우는 조건부 승인결정이 적극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특히 기업결합규제가 비유럽 기업의 유럽 기업 인수를 억제하기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해외자본의 역내기업 인수는 EU의 성장과 고용을 위협하지 않으며, 실제로 집행위원회는 기업결합심사시 국적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는다. 아울러 기업활동이 국제화됨에 따라 효과적인 법집행을 도모하고, 기업들에게 안정된 법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쟁당국 간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 독일 연방카르텔청, 카르텔 집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실시

독일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은 7월 14일, 카르텔 근절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카르텔 사건 전담부서를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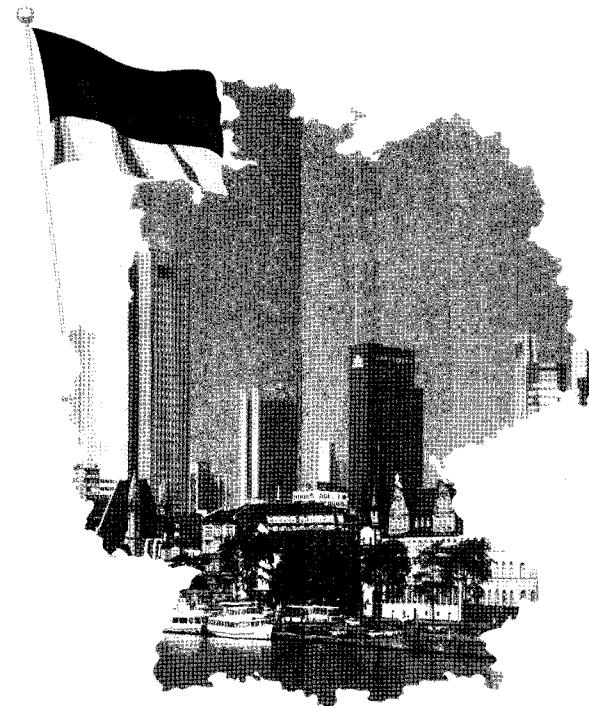
이번 개편으로 12개 사건처리 담당과(Decision Division) 중에서 기존에 가스·전력을 담당하던 과(10th Decision Division)가 카르텔 사건 전담부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총 3개 과가 카르텔 사건을 전담하고, 나머지 9개과가 각 산업 부문에 따라 나뉘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기업결합심사를 담당하게 됐다.

Andreas Mundt 연방카르텔청장은 “카르텔 사건의 특성상 인지가 어렵고 사건처리절차가 복잡하며, 소송업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 조직 개편의 이유로 설명했다. 연방카르텔청은 지난 10년간 경쟁 카르텔의 제재를 핵심 업무로 추진해왔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효과적인 카르텔 제재를 위해 관련 조직 및 제도를 개편해 ① 자진신고제도 도입(2000년) 및 개정(2006년)했고 ② 카르텔 방지 특별팀을 설치했으며(2002년) ③ 카르텔 전담부서를 설치했고(2005년, 2008년) ④ 소송·법제과 내 카르텔 과징금 절차담당 특별팀을 구성했다(2010년). 카르텔 사건처리 건수도 1994년부터 1997년 사이 7건에서 2010년 한해에만 13건(100여개 기업)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0년과 2011년의 주요 카르텔 처리 사건으로는 ① 커피로스터 건(1억9,000만 유로) ② 콘택트렌즈 건(1억1,500만 유로) ③ 보일러 건(9,100만 유로) ④ 인쇄용 화학약품 건(1,500만 유로) ⑤ 소방차량 건(2,000만 유로) ⑥ 식품회사 건(3,800만 유로)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직 개편이 급증하는 카르텔 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적절한 조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전체 사건처리 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중국 상무부, M&A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 규정(초안) 마련

중국 상무부(MOFCOM)는 6월 13일, 기업결합 관련 법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결합 신고 관련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규정(초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의견수렴을 거쳐 자침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2008년 8월 1일, 반독점법을 도입한 이후부터 자국기업과 비교해 외국기업과 관련된 M&A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외국기업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이에 상무부는 관련 법규를 보충해 기업결합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지침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동 지침의 제정으로 향후 M&A 사전신고의무(반독점법 제21조)를 위반해 정부의 승인 없이 합병조치한 회사에 대해 상무부가 법집행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법적 근거 : 기업결합이 국무원이 규정한 신고표준에 달하는 경우 사업자는 기업결합 전에 국무부 반독점법 집행기구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기업결합을 실시하지 못한다(반독점법 제21조)

동 지침은 반독점법 제21조에 근거해 M&A 사전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처리방침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M&A 사전신고 위반에 대한 조사 규정

#### 1. 입법근거 및 집행기구

- 입법근거 : 반독점법 및 기업결합 신고표준에 대한 규정
- 집행기구 : 상무부 및 지방정부 관련 기관

#### 2. 제3자에 의한 위반행위 신고

- 제3자의 서면신고에 의해 위반행위를 조사해야 함
- 신고인에 대한 비밀엄수의 의무

#### 3. 신고의무자에 대한 조사

- 기업결합 신고방법 제9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조사  
\* 합병에 참여하는 개개의 사업자(합병방식), 지배권을 취득하거나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자(기타방식)

#### 4. 조사서류 및 자료의 심사

- 신고의무자가 제출한 서류 및 자료에 대해서는 60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신고의무자는 상무부로부터 서면자료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기업결합 신고방법에 따라 문서를 제출해야 함

#### 5. 조사권한

- 반독점법 제37조\*에 해당하는 조사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구할 수 있음
- 조사권한 : 현장조사권, 진술청취권, 자료 열람 및 복사, 증거 봉인 및 압수, 사업자의 은행계좌 조회

#### 6. 피조사인의 권리와 의무

- 피조사인은 의견을 진술할 권리와 가지는 반면, 반독점법집행기구의 직무 수행에 협조하고 조사를 거절하거나 방해할 수 없음

####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기업결합 실시의 중지, 주식이나 자산의 처분, 영업양도 등 기타 필요한 조치 또는 50만 위안(한화 8,100만 원) 이하의 행정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8. 불복절차

- 처분에 불복할 경우는 먼저 상무부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필수절차)한 후, 행정재심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는 행정소송을 제기

#### 9.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 반독점법 제52조\*에 의거 처벌 가능  
\* 피조사인이 반독점법집행기구의 심사 및 조사에 대해 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 거절, 허위자료 및 정보의 제공, 증거의 은닉, 소각·이동, 기타 조사를 거절·방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개인은 10만 위안(한화 1,600만 원) 이하, 회사는 100만 위안(한화 1억 6,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0. 비밀보호

- 상무부, 신고인, 기타 회사 및 개인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상업비밀 및 정보에 대해 비밀보호의 의무를 가짐